■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Dichromic acid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13530-68-2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취급시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안경,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전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설치할 것
	화학사고 예방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의류·부스러기·쓰레기·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로부터 격리·보관 하시오. - 가연성 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하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보관・저장	-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